

의정부지방법원 2023. 7. 4 선고 2022나21896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---

## 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현, 고대현, 이세준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5. 9.

판 결 선 고 2023. 7. 4.

제1 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10. 26. 선고 2022가단84112 판 결

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 사이에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기재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21. 5. 2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21. 5. 24. 접수 제820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 피고 C는 원고에게 3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금전청구

부분에 대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).

## 이 유

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하되(민사소송법 제420조), 아래와 같이 덧붙인다.

원고는 피고 C가 변제자력이 없고 재산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를 하였는데, 사실은 피고 C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여 무자력으로 만든 후 이를 모르는 원고와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거나,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가 피고 B에게 증여를 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 C 재산유무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합의를 한 동기에 해당하고 중요한 것이므로, 이 사건 합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, 항소심에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오성우, 판사 박이규, 판사 황현찬